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5. 23.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

1. 수정이유

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,

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의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율
"연 4퍼센트"를 ⇒ "연 3퍼센트"로 함. (제22조 제4항)
-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의 m²표기 방식을 통일함.(제47조 별표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2조 제4항 중 "연 4퍼센트"를 "연 3퍼센트"로 한다.

안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

안 부칙 제2항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적용례)중

"제22조제1항·제2항 및 제3항"을 "제22조"로 한다.

[별표]

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

1. 도 본청

가.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

- 지 사 실 : 165.30㎡(집무실,부속실,접견실 포함)
- 부지사실 : 71.28㎡(집무실,부속실,접견실 포함)
- 실국장실 : 56.16㎡(집무실,부속실,접견실 포함)
- 실과장실 : 17.92㎡
- 담 당 : 7.65㎡
- 직 원 : 7.20㎡

나. 부속공간 면적

실 명	설 계 기 준			비 고	
회의실 (사용인원)	24명 미만 40~24㎡/인	25~49명 26~15㎡/인	50~99명 20~15㎡/인	100~149명 150~199명 16~10㎡/인 12~09㎡/인	200명 이상사 면적 =0.8㎡×사용인원
상황실	2.64㎡ × {과장급 이상 수 + 시장·군수 수}				
서비스 동선 문 엘리베이터	100명 미만 0.43㎡/인	100명~200명 미만 0.40㎡/인	200명 이상 0.33㎡/인	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중 면적의 27% ~33%	
	(12.87~19.6㎡) × 대수				
식당	1.63㎡ × 공무원 수 × 0.3				
휴게실	2.0㎡ × 공무원 수 × 0.15				
민원실	{(6.55㎡×민원담당 공무원 수×1.1)}+(0.13~0.2㎡×민원인 수×0.5)				민원실 공간확장 가능
숙직실	1인 15.12㎡/인	2~3인 11.52㎡/인	4인 이상 8.64㎡/인		
	(0.3~0.4㎡) × 공무원 수				
창고	0.72㎡/인 ~0.85㎡/인				
전산실	9.79㎡ × 담당직원 수 × 1.2				
민방위대피시설	개소당 660㎡ 이상				평시 승무시설로 이용

다. 설비관계 면적

실 명	설 계 기 준						
공조기계설 연면적대(%)	위 면적(㎡)	~3000	3,000~7,500	7,500~13,000	13,000~18,000	18,000~23,000	23,000~
	연면적대(%)	4.5~7.0	4.0~6.0	3.5~4.5	3.0~4.0	2.5~3.5	2.3~2.8
층상비설 (㎡)	사무공간	500		800		1,000	
	층상비설	6.6		8.4		10.2	
주상비설 (㎡)	사무공간	~1,000	1,000~4,000	4,000~8,000	8,000~12,000	12,000~16,000	
	주상비설	14	37	74	111	149	
	사무공간	16,000~20,000	20,000~24,000	24,000~28,000	28,000~32,000		
주상비설	186	223	260	297			

라. 공용면적

- 연계공간면적 : (직무면적 + 부속공간면적 + 설비관계면적) × 30~40%

2. 도 의회

구분	실 별	설 계 기 준	비 고	
의원실	a	의 장 실	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	
		부의장실	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	
		위원장실	시·도의 실·국장실 면적 준용	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
회의실	b	본회의장	의원 수 × 5m' + 방청석 수 × 1.5m'	
		회의실	의원 수 × 3.3m' + 답변석 면적	대/ 중/ 소
		위원회실	의원 수 × 8.2m'	상임위원회 수만큼
부속공간	c	사무국장실	시·도의 실·국장실 면적 준용	
		사무실	직원 수 × 7.2m'	
		자료실 및 도서실	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~297m'	
	·	대기실	의 원	의원 수 × 2.5m'
			기 자	50m'
			윤전기사	윤전기사 수 × 1.8m'
	d	휴게실	의 원	의원 수 × 2m'
			직 원	직원 수 × 2m'
		방청객	방청객 수 × 2m'	방청객 수 = 인구 수 × 0.000015 + 50
		당 직 실	2인실 기준 15m'	
화 장 실	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			
기 타	예비실(50m ²)을 1개소 이상 확보	창고 / 예비실 등		
연계공간	로비·복도·계단	(a+b+c) × 30~40%		

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상 잠종채산 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부 칙 ① (생략) ② (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) 제22조제1항·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. ③~④ (생략)</p>	<p>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</p> <p>.....연 3퍼센트.....</p> <p>부 칙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) 제22조</p> <p>③~④ (개정안과 같음)</p>